

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(리볼빙) 약정서

하나카드(주) 귀중

구분	내용
한도 및 대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(리볼빙)은 회원이 보유한 모든 신용카드(가족카드 포함)에 대해 신용한도범위 내에서 이용한 국내·외 일시불 이용금액을 대상으로 하며, 회사는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(리볼빙) 잔액의 최고한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.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(리볼빙)은 심사를 거쳐 가능한 대상자일 경우 약정이 가능하고, 약정시점으로부터 약정기간 까지 유효합니다.
약정기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(리볼빙)은 약정기간은 최대 5년이며, 1년 단위로 선택이 가능합니다. 약정기간 <input type="checkbox"/> 5년 <input type="checkbox"/> 4년 <input type="checkbox"/> 3년 <input type="checkbox"/> 2년 <input type="checkbox"/> 1년 선택한 약정기간 종료 1개월 이전에 만료 예정사실을 통보하고 이후 1개월 이내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 경우는 기존 약정기간으로 연장이 됩니다. 약정기간 연장 시 고객의 신용도에 따라 연장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.
결제비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약정결제비용은 최소결제비용 ~ 100% 범위내에서 5% 단위로 자유롭게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. 약정결제비용 <input type="checkbox"/> 100% <input type="checkbox"/> 50% <input type="checkbox"/> 최소결제비용 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 ()% 최소결제비용은 10~30%이며, 회원의 신용도에 따라 차등 적용 됩니다. 약정결제비용에 미달하더라도 최소결제비용(또는 5만원 중 큰 금액) 이상만 결제되면 잔액은 다음 결제일로 이월되며, 이월금액에 대해서는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(리볼빙) 수수료가 부과됩니다.
금리인하요구권 안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(리볼빙)이 금리인하요구권의 대상임을 확인하셨습니다가? 금리인하요구권 대상 확인 <input type="checkbox"/> 대상 <input type="checkbox"/> 비대상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(리볼빙) 회원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의13(금리인하 요구)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(예: 취업, 승진, 재산증가, 개인신용평점 상승, 기타 신용상태 개선)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 단,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의 행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 금리인하요구권은 당사 홈페이지, 앱, 고객센터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(신청시기, 횟수제한 없음) 금융회사는 고객에게 신용상태 개선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 신용상태의 개선이 경미하여 금리인하 요구 인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등 심사 결과에 따라 고객의 금리인하 요구는 수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 금융회사는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날부터 '10영업일 이내'(고객에게 자료의 보안을 요구하는 날부터 자료가 제출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.)에 금리인하 요구 수용 여부 및 그 사유를 전화, 휴대폰메시지, 전자우편(E-MAIL)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고객에게 통지합니다.
수수료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(리볼빙)은 소정의 심사를 거쳐 대상여부와 최초 수수료율이 결정됩니다. 최소 3개월 동안은 수수료율을 변경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합니다. 동 기간 경과 이후에는 수수료율을 재산정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, 적용 1개월전까지 이용대금명세서, 서면, 전화, 전자우편(E-MAIL), 휴대폰메시지 중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변경된 수수료율을 고지합니다.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(리볼빙) 신청 시 수수료율은 이용대금명세서, 서면, 전화, 전자우편(E-MAIL), 휴대폰메시지 등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고지합니다.
지연배상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결제한 금액이 최소결제금액보다 적은 경우, 최소결제금액에 대한 미결제금액을 연체 처리합니다. 지연배상금=(최소결제금액-정상결제원금) X 연체 이자율 X 연체일수 ÷ 365(윤년은366)
청구방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(리볼빙) 회원의 결제금액은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(리볼빙) 원금 및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(리볼빙) 수수료,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(리볼빙) 비대상금액(할부, 단/장기카드대출(현금서비스/카드론), 제수수료등)의 합계금액입니다. 1)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(리볼빙) 원금 [전월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(리볼빙) 이월잔액 + 당월 일부결제금액이월(리볼빙) 신규이용금액] X 약정결제비용 2)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(리볼빙) 수수료 [전월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(리볼빙) 이월잔액 X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(리볼빙) 수수료율 X 이용경과일수 ÷ 365(윤년은 366)]
기 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약정변경 및 해지 희망시 당사 고객센터,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. 이월된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(리볼빙) 금액에 대해서는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(리볼빙) 수수료가 부과되며, 다음 결제일까지 자동 출금되지 않으므로, 선결제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당사 고객센터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. 결제일의 1영업일 전까지 약정 등록하시면 도래하는 결제일에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(리볼빙)이 적용되며, 등록일 이전에 이용하신 일시불도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(리볼빙)이 적용됩니다. (단, 금융결제원 계좌의 경우 2영업일 전까지 약정 등록 시 도래하는 결제일에 적용됩니다.) 결제일의 2영업일 전까지 약정 해지하시면, 당월 결제일부터 적용되고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(리볼빙) 잔액은 결제일에 일괄청구됩니다.

고객 작성용

- 채무자인 고객은 본인의 (신용상태가 개선)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(예 : 취업, 승진, 재산증가, 개인신용평점 상승, 기타 신용상태 개선) 금융회사에 (금리인하를 요구)할 수 있습니다.
- 「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」 이월잔액 발생 시 (수수료)가 부과되며 개인신용평점이 (하락)할 수 있음을 상세하게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습니다.
- 약정기간 종료 도래 시 종료 1개월 이전에 만료 예정사실을 통보하고, 이후 1개월 이내에 별도 약정해지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기존 약정기간으로 (연장)될 수 있으며, 약정기간 연장시 신용도에 따라 연장이 (제한) 될 수 있음을 상세하게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습니다.
- 상기 내용 외에도 계약의 (중요내용)에 관해 상세하게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습니다.

귀하가 모집자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듣고 약관내용을 이해하신 경우 자필로 위의 표 안에 옆게 인쇄된 부분을 직접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본인은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(리볼빙)을 거래함에 있어 상기 각 조항 및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이 적용됨을 승인하며, 본약정서 주요 내용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음을 확약하며 위 내용과 같이 신청합니다.

고객대체번호 :

* 고객대체번호 확인(수신자부담) 080-889-1100

20 년 월 일

신청인 성명 :

(서명/인)

